

2025년 경남 창원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TECH-UP+ 사업 연장 공고

2025년 6월 23일 18시 현재,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과제 수 대비 신청과제 수)이 1:1 이하로, 과제 공고에 명시한 대로 2주 공고 연장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전체 일정변동이 있으니, 신청접수(예정) 기업은 본 공고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원 강소특구 신규 입주 인프라(테크비즈센터)의 기업 입주 유치 지원 및 입주기업 특화분야 기술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5년 이노테크 기업육성 (TECH-UP+)을 공고하오니 참여 희망기업은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원 강소특구 신규입주공간(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과 창원시 소재 특화지원기관* 소속 전문가(연구자)가 특화분야(지능전기·기계융합, 전기추진모빌리티(e-모빌리티))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및 입주 초기 안착 지원
- *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공공연구기관

□ 사업내용

- 테크비즈센터 입주연계 기술지원(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 AI 솔루션 통합지원)으로 첨단기술·제품·서비스 확보 및 고도화, 창원 강소특구 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3.5백만원 (과제 당 최대 5천만원, 총 7개 과제)

- 한국전기연구원 6건, 창원시 소재 지역혁신기관(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 위탁 1건

□ 지원내용: 창원시 특화지원기관(대학, 출연(연), 전문(연) 등) 전문가와 테크비즈센터 입주 예정인 과제 수요 기업 사전매칭 후 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 AI 기술 기반 솔루션(제품·서비스·플랫폼 등) 지원, 제품·서비스 등 성과물 도출

- (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 제품 컨셉기획·설계지원·제작구현·시험인증까지 지원항목 중 최소 3가지 이상 희망하는 과제
- (AI 솔루션 지원) AI 솔루션 분석·개발·실증·적용·확산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구 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	① 제품 컨셉 기획	기업분석을 통한 특화분야 신규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BM)* 수립
	② 제품 설계 지원	선진국형 제품 개발 프로세스인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활용 등의 제품설계·전산해석 지원
	③ 시작품 구현	스마트 3D 프린터 등을 활용한 다품종 소량 시작품 구현 지원
	④ 시제품 제작	연구원 인프라 및 전문제작업체 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⑤ 시험인증·평가	정부인증획득(NEP,NET 등)지원, 형식·검수시험, 기타 제품성능확인 위한 참고시험 등 시험인증·평가 지원
AI 솔루션 지원	AI 기술 솔루션 도입·내재화·활용 등	AI 솔루션 도입·내재화·활용을 위한 개발·실증·적용·확산·최적화·고도화 전주기 지원

*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 항목 중 ① 제품컨셉기획은 창원 강소특구 타 지원사업에서 수립한 사항도 1개 지원 항목 충족 인정 (기존 강소특구 육성사업으로 사업계획(BM) 수립한 경우, 2가지 분야만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창원시 소재 특화지원기관 소속전문가(연구자)와 사전매칭 된 창원 강소특구 신규 기업 입주 공간(테크비즈센터) 입주(예정) 기업
 - (기술핵심기관) 기술핵심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이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본 과제를 총괄함
 - (특화지원기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 또는 창원시 소재 공공연구기관*이 특화지원기관이 되어 협약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사업비는 위탁연구개발비로 지급
 - (수혜기업) 특화지원기관과 매칭되어 협약서(협약 같음)에 근거하여 기술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본 과제에서는 창원 강소특구 신규입주공간(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으로 제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소재지는 중된 분단도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관리(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

- (성과물소유) 특화개별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 32조에 따름
- (성과물관리) 특화개별사업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 33조에 따름
- (무상양여) 특화지원기관은 기술핵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제품 성과물을 수혜 기업에 무상양여 가능 (강소특구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5조제1항제1호)
*특화지원기관이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인 경우, 「시작품 및 시제품 관리 기준」 제4조 및 「고정자산 관리요령」에 따름

「시작품 및 시제품 관리 기준」 제4조 (관리대상 시작품 및 시제품)

이 기준에 의한 관리대상 시작품 및 시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 이관될 시작품 및 시제품
2. 취득금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써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개량 또는 변형하여 새로운 연구업무 수행에 사용이 가능한 시작품 및 시제품
3. 동종, 유사 또는 새로운 연구업무 수행에 사용이 가능하되 개량하거나 변형 등이 예상되는 시작품 및 시제품
4. 그 밖에 보존,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시작품 및 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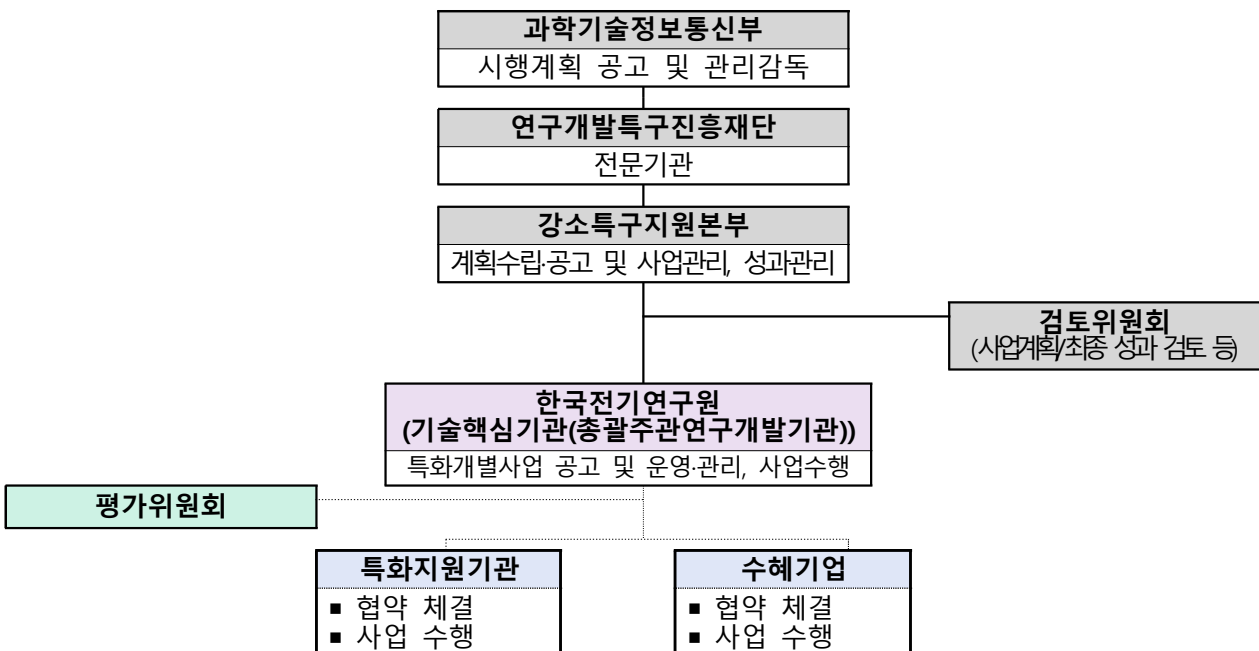
시제품 등재 절차 수행

홈페이지 접속 http://kepos.keri.re.kr	업무모음→ERP→자산→자산등재신청(시제품) 시제품 선택	사진첨부 후 등재	결재 전결권자: 센터장/본부장
--	---------------------------------------	-----------	----------------------------

- (기술이전) 기술핵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수혜기업 간의 협의를 통해 지원 기술 관련 제품화·양산화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가능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주요 일정		내용
[기술핵심기관] 사업 공고	'25. 6. 13.(금) ~ '25. 7. 7.(월)	모집 공고 한국전기연구원 홈페이지(keri.re.kr) - 공지사항 한국전기연구원 포털 (gw.keri.re.kr) - 공지사항
[기술핵심기관] 신청.접수	'25. 6. 16.(월) ~ '25. 7. 7.(월) 18시까지	사업 신청 접수 (제출처: jmlee@keri.re.kr)
[기술핵심기관] 사전검토	'25. 7. 8.(화) ~ '25. 7. 10.(목)	평가위원 사전 서면 검토
[기술핵심기관] 선정평가(발표평가)	'25. 7. 16.(수) 예정	선정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개최 (발표평가)
[기술핵심기관] 결과통보 (이의신청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5. 7. 18.(금) 예정	결과통보 공문 발송 (이의신청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포함) (발송처: 각 기업대표 및 연구책임자 이메일)
[기술핵심기관] 협약 체결	'25. 8. 1.(금)	협약 체결
[기술핵심기관· 특화지원기관·수혜기업] 과제 수행 및 관리	'25. 8. 1.(금) ~ '26. 1. 30.(금)	과제 수행 및 관리
[특화지원기관] 최종 보고서 제출	'26. 1. 26.(월) ~ '26. 1. 30.(금) 예정	최종 보고서 제출 (제출처: jmlee@keri.re.kr)
[기술핵심기관] 최종평가(발표평가)	협약종료 후	최종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개최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중(%)	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5	30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지원의 필요성 및 신청지원 분야의 적합성	20	40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	20	
지원효과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사업지원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20	30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합 계		100	100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서면검토) 제출서류의 사전 서면검토결과에 따른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공문발송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도~'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및 회계감사보고서 * 선정 기관 중 '24년 표준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협약 완료 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4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하며, '24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 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선정평가는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신청자격 서면검토 및 현장발표평가로 운영함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과제 수 대비 신청과제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5.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 한국전기연구원(www.keri.re.kr) 공지사항
- 한국전기연구원 그룹웨어(www.gw.keri.re.kr) 공지사항

공고기간 : '25. 6. 13.(금) ~ '25. 7. 7.(월) *일정 등은 사업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접수기간 : '25. 6. 16.(월) ~ '25. 7. 7.(월), 18:00 까지

선정평가 : '25. 7. 16.(수) 예정

결과통보 : '25. 7. 18.(금) 예정

협약기간 : '25. 8. 1(금) ~ '26. 1. 30(금) (6개월)

*'25.7월~'26.1월(6개월)로 하되, 평가위원회 등 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jmlee@keri.re.kr) 통한 온라인 접수

필수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 및 원본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이메일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제출대상		파일형식
			특화지원기관	신청기업	
1	사업 신청 공문		-	○	PDF
2	과제 계획서	서식 1호	○	-	압축파일 (한글 1부, PDF 1부)
3	사업자 등록증	-	○	○	PDF
4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 ※ 기술핵심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제출 제외	○	PDF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	○	PDF
6	NTIS 차별성 검토 검색결과증 ※ 차별성 점수 40점 기준	참고1	○	-	PDF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	○	PDF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	○	PDF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	○	PDF
10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22~'24)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PDF
11	국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PDF
12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PDF
13	참여연구원 정보	서식 6호	○	○	엑셀(Excel)
14	신규입주공간(테크비즈센터) 입주 약약서	서식 7호	-	○	PDF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li style="padding-left: 20px;">*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강소특구 특화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한국전기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9조제2항에 따라 본 사업에서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3책5공) 예외 적용(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관리대상 사업 아님)
- 본 과제는 참여율 관리대상 사업으로 연구자 개인의 참여율 합계는 130% 초과 불가
- 문의처: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창업실 이정민 (jmlee@keri.re.kr, 055-280-1063)